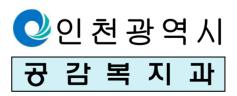
등록번호	공감복지과-16318				
등록일자	2018. 11. 06.				
결재일자					
	2018. 11. 06.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공감복지담 당	공감복지과 장	보건복지국 장	행정부시장	시장	
					2018. 11. 6.	
협조	TL					
<u> </u>	0	획조정실장 성가족국장 산담당관				

민선7기 시장 공약시항 2019년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목 차

I. 추진근거 ······ 1
II. 추진방향 1
Ⅲ.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
IV. 처우개선사업 추진계획 ······ 3
① 복지점수 지원 3
② 특수지근무수당 지원 3
③ 유급병가 확대 4
④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및 연차별 로드맵 계획 ···································
5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5



민선7기 시장 공약시항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안)

- ◇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 지원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현장 조성 및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

I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 내지 제8조
-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Ⅲ 추진방향

- 종사자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
 - ⇒ 복지점수 지원, 특수지근무수당 지원, 유급병가 확대 등
- 종사자 복지욕구 파악과 처우개선 방안 연차별 로드맵 마련
 - ⇒ 처우개선 방안과 실천과제 등 중장기 정책방안 모색 실태조사 학술연구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6조 (종합계획 수립) 및 제7조(3년마다 시행)
 -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 운영** : **15명**(당연직 · 위촉직)
-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 준수(100%) 유지
- 종사자 지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 지원



○ 인건비(보조금) 지원시설¹〕 현황

- 국·시비 지원시설 312개소 1,790명 - 총 636개소 3,897명 - 시 비 지원시설 324개소 2,107명 -

○ 시설유형별 종사자 현황

◆ 대상시설: 636개소 시설 (국비 312, 시비 324)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노 숙 인	지역 자활 센터	종 합 사 회 복지관	장 애 인	정신 요양	여 성	노인	아동	청 소 년	가 족	기 타
계	636	4	11	19	146	12	23	103	216	10	21	71
국・시비	312	1	11		20	2	23	5	201	10	11	28
시비	324	3		19	126	10		98	15		10	43

◆ 대상자 : 3,897명 (국비 1,790, 시비 2,107)

(단위: 명)

구분	합 계	노 숙 인	지역 자 <u>활</u> 센터	종합 사회 복지관	장 애 인	정신 요양	여성	노인	아동	청 소 년	기족	기타
계	3,897	48	70	280	1,362	80	108	499	854	71	202	323
국·샤비	1,790	36	70		548	49	108	62	504	71	160	182
시비	2,107	12		280	814	31		437	350		42	141

※ 경로당(1,489개소), 보육시설(2,151개소 15,242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418개소 9,464명) 등 제외

¹⁾ 인건비(국·시비) 지원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인건비 지원 종사자 (계약직 등 포함)



처우개선사업 추진계획

] 복지점수 지원

IV

종사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후생복지 지원

○ 적용대상 : 인건비(국·시비) 지원시설 정규직²⁾ (573개소 3,697명)

○ 지원내용 : 10호봉 미만 연 150점, 10호봉 이상 연 200점

- 지원기준 : 상반기 → 1월 1일 / 하반기 → 7월 1일 현재 재직자

- 지급횟수 : 2회(상·하반기) ※ 복지점수 1포인트 : 1,000원

O 시행일시 : 2019년부터

○ 소요예산 : 638,200천원

2 특수지근무수당 지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적용대상 : 인건비(국·시비)지원시설 정규직 (5개소 104명)

○ 적용지역 : 강화·옹진군 일부, 서해5도 지역 근무자

- 강화·옹진군 : 4개소 90명(장애인시설:샬롬원,장봉혜림원·요양원·직업재활시설)

- 서해5도지역 : 1개소 14명(백령종합사회복지관)

²⁾ 인건비(국·시비) 지원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인건비 지원 <u>정규직 종사자 (단, 영유아보육법 제외)</u>



○ 지원기준 : 지역 등급에 따라 지급

지역 및 등급	특지	갑지	을지	병지	서해5도
수당지급기준	월 6만원	월 5만원	월 4만원	월 3만원	월 20만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시행일시 : 2018. 7. 1부터 소급 적용

○ 소요예산 : **87,600천원**('18년 하반기 48,600천원)

3 유급병가 확대

유급병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범위를 10일에서 60일로 확대해고용불안의 염려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건강권보장

- 적용대상 : 시비 인건비 지원시설 근무 종사자 (273개소 1,952명)
 - ※ 국비시설은 개별법 및 중앙정부의 사업안내(지침)등 준용
- 지원내용 : 유급병가 연 10일 ⇒ 연 60일 범위 내(확대)
 - ※ 병가에 대한 <u>인건비는 60일 범위 내에서 지원</u>하되 시설 규모 등 근무 환경의 차이를 감안하여 <u>각 시설별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u> 실제 병가사용 일수를 정할 수 있음

○ 시행일시 : 2019년부터

○ 소요예산 : 추가예산 불필요(운영비 예산에 포함)

4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및 복지욕구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O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7조(실태조사 : 3년마다 시행)

○ 사 업 명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O 수행기관 : 인천복지재단

○ 시행일시 : 2019년 3월

O 연구결과 활용방안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차별(3년간) 로드맵 마련(2019. 10월)

-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반영
-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소요예산 : 20,000천원

5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주요사업과 시책의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전문가·공무원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O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 내지 제15조
- 시기 및 위촉일 : **2018. 11월** (연1회 정기회의, 기타 임시회의)
- O 위원회 구성
 - 인 원 : 15명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포함)
 - 당연직 4명 (행정부시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예산담당관)
 - 위촉직 11명 (시의원, 복지재단, 변호사, 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소요예산 : 2,520천원